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23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1998. 9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('98. 8. 31) 및 행정자치부 준칙(안)에 의거
- 조문 수정 및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동으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.

□ 주요 골자

-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

<국가직 ⇒ 지방직 > - 14명

- 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 ⇒ 지방농업연구관 : 6명
-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⇒ 지방농촌지도관 : 2명
-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⇒ 지방농업연구사 : 6명

<지방직 ⇒ 국가직 > - 1명

- 경제통상국장 지방부이사관 · 지방공업부이사관
⇒ 부이사관 · 공업부이사관 : 1명

<정원 변동>

- 지방공무원 : 2,442명 ⇒ 2,455명(13명 증)
- ※ 국가공무원 : 22명 ⇒ 9명 (13명 감)

○ 정원관리분야의 자구 수정에 따른 정비

- 일반행정부문 : 1,524명 ⇒ 집행기관의 정원 : 1,537명
- 의회행정부문 : 57명 ⇒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7명
- 소방행정부문 : 820명 ⇒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
소방공무원의 정원 : 820명
- 교육행정부문 : 41명 ⇒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
무원의 정원 : 41명

□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,제4조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”로 한다.

제2조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정원제외) : 1,537 명
2.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820 명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1 명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7 명

총 계 : 2,455명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정원관리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 본청, 의회사무처, 직속 기관, 출장소, 사업소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